

입영등 연기 추천 신청서

※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작성하시기 바라며, []에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

접수번호		접수일시		처리기간	2일
구 분	[] 체육 분야 우수자 []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				
병역 의무자	성명	생년월일		(휴대)전화번호	
	주소				
병역사항	☐ 현역병(상근예비역 포함)입영 대상자 ☐ 사회복무요원소집 대상자 ☐ 대체복무요원소집 대상자 ☐ 기타()				
징집·소집 연기	연기기간				
	<div style="text-align: center;"> 년 월 일까지 </div>				
	연기사유				
	체육 또는 대중문화예술 분야 활동사항				

「병역법」 제6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4조의3제2항에 따라 입영등 연기 대상에 해당되어 징·소집을 연기하고자 하오니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$\frac{1}{\sqrt{2}}$ $\frac{1}{\sqrt{2}}$ $\frac{1}{\sqrt{2}}$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문화체육관광부장관(대한체육회장) 귀하

첨부서류	1. 국가대표 확인서(「병역법 시행령」 제124조의3제1항제1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) 2. 한국신기록 확인서(「병역법 시행령」 제124조의3제1항제2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) 3. 그 밖에 체육·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담당공무원 확인사항	상훈 수여 확인서(「병역법 시행령」 제124조의3제1항제3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)
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 의 담당
공무원 확인사항(상훈 수여 확인서)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※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상훈 수여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.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유의사항

1. 「병역법」 제6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4조의3제5항에 따라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는 등의 경우에는 연기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.
2. 「병역법」 제60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4조의3제4항에 따라 체육 분야 우수자는 27세,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는 30세를 초과하여 연기할 수 없습니다.

처리절차

```

graph LR
    A[신청서 작성] --> B[추천 여부 결정]
    B --> C[연기 여부 결정]
    C --> D[통지]
    A1[신청인] --- A
    B1[대한체육회장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] --- B
    C1[지방병무청장] --- C
    D1[지방병무청장] --- D
  
```